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 1)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 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8호	자격정지 12개월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